

사전감사대상

분 기 번 호	자음 5511 — 481		감사 <i>7/14</i>		
처리기한	19	보존기간	이 사 부총재 총 재		
기 안	19 92 . 7	영구 년			
발 신	19				
조사역	과 장	수석부부장	부 장	<i>7/13</i> <i>7/14</i>	
<i>이</i> <i>성</i> <i>성</i> <i>성</i>					
기 안 자	전 송 철	합의 (법규과) 기획부장		전 결 근 거	직부원한 분류표 제 1 장 제 1 절 제 1 항 개 3 호
소 속	금융기획과				
직 위	행원 전화 4471	참조			
수 신					
참 조					
제 목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					
중소기업 여신과 관련한 부통산달보취득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 붙 임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 1부. 끝.					

발 송
업무연혁 기 록
필 요
파 관



한 국 은 행

당해 021 10(80) 11. 191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

현	행	개	정(안)	비	고
제1조 ~ 제4조	(생 락)	제1조 ~ 제4조	(현행과 같음)		
제4조의2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		제4조의2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			
① 「규정」 제3조의2에서 한국은행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		①	(현행과 같음)		
1. 중소기업(도·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기타 공공·사회 및 개인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시설자금 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2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명의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	1. 중소기업(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, 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산업, 기타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시설자금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2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명의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으로서 담보제공자가 1992. 7.16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취득		○ 담보취득 제한업종의 범위 축소	
2. 중소기업(무역업이외의 도·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기타 공공·사회 및 개인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한 기업주(법인대표) 및 그 배우자와 기업주(법인대표)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명의 거주주택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5호에서 정한 사치성재산 제외)의 담보취득		2. 중소기업(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, 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산업, 기타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2 제6호에서 정한 제3자명의 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으로서 담보제공자가 1992. 7.16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취득		○ 담보취득 제한업종의 범위 축소	
2-2.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2 제6호에서 정한 제3자명의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		(삭 제)	○ 담보취득 예외허용 제3자명의부동산의 범위 조정	
				○ 제1항 제2호의 규정내용에 포함	

현	영	개	정(안)	비	고
3.	동업관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(무연업이외의 도·소매 및 음식 숙박업,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영위 기업 제외)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동업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동업인이 동업기업에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의 담보취득	3.	동업관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(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, 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산업, 기타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)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동업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동업인이 동업기업에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의 담보취득	o	담보취득 제한업종의 범위 축소
4.~7.	(생 략)	4.~7.	(현행과 같음)		
㉑	(생 략)	㉑	(현행과 같음)		
제5조	(생 략)	제5조	(현행과 같음)		
제6조 (사채보증 및 인수)		제6조 (사채보증 및 인수)			
①~④	(생 략)	①~④	(현행과 같음)		
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시설대여산업육성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회사 자기자본의 5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		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시설대여업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 회사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회사 자기자본의 5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		o	「시설대여산업육성법」의 명칭변경 (91.12.27)에 따른 자구수정
⑥	(생 략)	⑥	(현행과 같음)		
제6조의2~제9조	(생 략)	제6조의2~제9조	(현행과 같음)		
	(신 설)		부		o 시행일자 명시
			이 세칙은 1992. 7. 16일부터 시행한다.		